

IV. 결론

광주중재부에 접수된 중재신청사건을 중심으로 중재신청현황과 처리결과 및 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재신청 사건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재신청의 증감 요인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은 미루고 그 추이만을 살펴보는데 만족하여야 할 것 같다.

지난 5년간 중재신청사건의 처리결과, 양당사자가 합의한 비율은 전국의 평균 합의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피해구제보도된 사건의 비중은 전국 평균 피해구제보도율에 비해 1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중재신청 대상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아 중재신청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처리결과 기각된 사건도 있고 중재불성립된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여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중재신청한 사건이 다수이다. 따라서 취재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여, 기사에 반영하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들어 갑작스레 등장한 시선이 아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때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중재신청이 증가하자 이를 두고 언론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야당에서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여당에서는 “사전검열, 언론통제 등 비정상적 권언관계에서 정상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⁴⁾ 이러한 잔상이 채 지워지기 전에 재연되는 양상이다.

정부기관이 언론중재신청 당사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분명한 것

4) 미디어오늘, 2001. 9. 13 ; 동아일보, 2001. 9. 27.

은 언론중재는 화해와 조정의 장이라는 점이다. 중재부에서 설혹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하더라도 이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언론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다고 잘못된 보도라 평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반론보도를 하였다고 하여 기분나빠 할 사안도 아니다. 반론은 반론일 뿐인 것이다.

참고문헌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II』, 법문사, 2002.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양경승,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중재』, 1996년 겨울.

양경승,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2001년 봄.

언론중재위원회, 『연차보고서』, 2000~2003.

조준원, “반론보도현황과 개선방향”, 『신문과방송』, 1997년 12월호.

조준원, “변화하고 있는 반론권 요구와 수용”, 『밀레니엄』, 1998년 가을, 서강
엔터프라이즈.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한동원, “중재신청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언론중재』, 2001년 봄.